

어장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(정인화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3182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16. 11. 1.

발의자 : 정인화 · 홍문표 · 진선미
주승용 · 황주홍 · 윤영일
최도자 · 이용주 · 김종회
송기석 · 이동섭 · 박준영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. 벌금형은 근거 법률 제·개정 시 경제상황을 반영하게 되는 바, 경제적 환경이 변화한 법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일부 벌금형은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하여 과소하여 형사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에 부족한 문제가 있음.

이에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,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(안 제27조 및 제28조).

어장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어장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5천만원”을 “7천만원”으로 한다.

제28조 중 “500만원”을 “2천만원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